

양주권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사업에대한광역화협약서(안)

의 안 변 호	4-94
------------	------

제출연월일 : 2003. 7.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41조,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통합처리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설치 추진계획에 의거 양주군과 우리시가 우선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협약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업규모등

- 위치 :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39번지외
- 부지면적 : 44,134㎡
- 규모 : 200톤/일 2기 (우선 200톤/일 1기)

나. 사업비 부담 : 추후 설계 완료후에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등 결정여부에 따라 협의후 부담

다. 운영비 부담 : 2개 시·군이 반입처리한 폐기물량을 100분율로 환산한 비율에 따라 부담

라. 시설관리 및 운영 : 시설을 공동소유로 하며, 2개 시·군의 협의하에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

마. 협약서 효력 : 협약 체결한 날부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광역화 협약서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의거 양주군과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양주군이 발주청이 되어 건설하는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통합처리 하기 위하여 양주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동두천시장(이하 “을” 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目的) 본 협약은 “갑”과 “을”의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 회수시설”이라 한다)에서 통합 소각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意)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자원회수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각시설을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회수시설의 설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5. “운영비”라 함은 회수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廣域 및 基礎團體長의 責務) ①“갑”은 회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이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재정적 절차와 법적 절차등 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본 협약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경기도지사는 본 자원회수시설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事業施行期間) 사업자의 사업시행기간은 본 협약의 효력 발생일 부터 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의 준공일로 한다.

제5조(事業의 規模) 자원회수시설설치 사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위 치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39번지외 7필지
2. 부지면적 : 44,134㎡
3. 공사규모 :
 자원회수시설 : 200톤 2기(단, 1기 공사로 하고 추가 발생량을 감안 1기 추가건설을 위한 공간 확보)

제6조(事業의 範圍) ①자원회수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의 기술적·관리적 책임은 “갑”이 진다

1. 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시공관리, 감리전반 등)
2.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환경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 인·허가 등

②“갑”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年次別 投資計劃) “갑”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을”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토록 하며, 자원회수시설설치를 우선 시행한다.

제8조(處理對象 廢棄物)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갑”과 “을”의 관할 구역안(주둔 한·미 부대 포함)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관한 세부내역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事業費의 負擔 等) ①“갑”과 “을”의 사업비 부담액은 추후 실시설계 완료후에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되,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 등에 따라 협의하고 부담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 공사비, 보상비, 환경영향평가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주민지원사업비등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된 비율로 부담한다.
2. 사업비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갑”이 집행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을”의 사업비는 “갑”의 요구가 있을시 “갑”의 일반회계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을 위하여 차년도의 부담액을 8월 이

전에 통보해야 한다.

3. 공동투자 되는 사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사업설치완료후 “을”의 입회하에 정산한다.

②제1항의 각호중 “을”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제14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用地買收의 登記 等)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은 “갑”이 하고 매입비는 “갑”이 부담하며, 소유권 또한 “갑”으로 한다

제11조(施設管理 等) ①자원회수시설의 소유는 투자비율의 지분에 의한 공동소유로 한다.

②자원회수시설의 관리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運營委員會의 設置 및 構成) ①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운영위원은 “갑”과 “을”의 추천에 의한 동수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搬入 및 利用期間 等) ①“갑”과 “을”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반입 처리함에 있어서 1일 20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추가시설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관내의 발생량 증가 추이에 따라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본 시설에 반입처리 하는 것으로 한다.

③동 시설물의 폐쇄 또는 증설, 신규 설치시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14조(運營費 等 負擔) ①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는 “갑”과 “을”의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량을 100분율로 환산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갑”과 “을”은 관할 구역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시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燒却處理 中止) “갑”과 “을”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시설의 고장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정기진단검사등을 제외하고는 처리를 중지 할 수 없다.

제16조(廢棄物 團束) 관내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선별등 음식쓰레기가 혼합되어 반입되지 않도록 “갑”과 “을”은 철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제17조(廢棄物 搬入의 拒否) ①생활폐기물중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을 거부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자원회수시설이 열분해용융시설일 경우와 불연·난연성을 가리지 않는 시설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危險負擔) “갑”은 각종 재난에 대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이 협의의 부담한다.

2. 사업시행중 “갑”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때에는 “갑”이 부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19조(協議) “갑”은 사업시행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20조(環境負擔) 자원회수시설을 유지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향후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을”은 환경영향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환경부담금을 부담한다.

제21조(住民支援事業費 分擔 等) ①주민지원사업비는 “갑”과 “을”의 재원과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선 부담하고 추가 광역화에 참여하는 시·군은 기 부담된 금액을 :갑“과 ”을“의 지원비율에 의거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범위는 주민지원사업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22조(協約의 諸般 規定 根據) 본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본 협약의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하며, 관례가 없을시 “갑”과“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3조(協約의 效力 等) ①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 한다.

②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경기도지사의 입회하에 “갑”, “을” 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월 일

“갑” 양 주 군 수

“을” 동 두 천 시 장

입회인 경 기 도 지 사